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근거 마련〉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92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근거 마련 ..... | 3  |
| ※ 참고자료 .....                           | 11 |
| 1. 개정된 「보험업법」 .....                    | 1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0.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 2. 주요내용

-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제4항 및 제57조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근거 마련

#####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sup>1)</sup>에게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대행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7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p>&lt;신 설&gt;</p> | <p>제6장 벌칙</p>                                                                                                                                |
| <p>&lt;신 설&gt;</p> | <p>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나. 검토사항

-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질병에 따른 입원·통원·처방 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sup>2)</sup>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약 60% 중반<sup>3)</sup>의 보장률에 머물고 있는 공적 건강보험에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지급은 ①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통보하고 ②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구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하면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을

2)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3) 2022년기준 건강보험보장률 66.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한 후 ③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확인 또는 조사, 지급보험금 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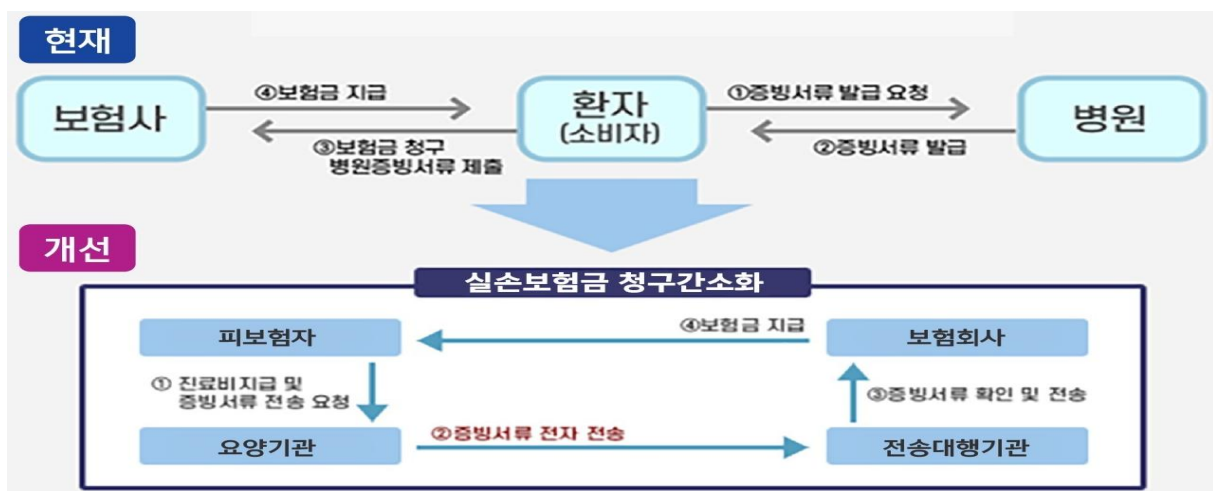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서류(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보험자 등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의 청구에 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 우체국보험을 포함하여 개별 보험사들은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방법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문서 발급 및 전송이라는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청구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sup>4)</sup>

4)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49호(2020.9.7.),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10월에 「보험업법」이 개정<sup>5)</sup>되었고(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개요 >



- 그러나 개정된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 보유계약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154만 건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점유율이 20%가 넘어서고 있으며 보험사 전체(손해보험사 포함)를 기준으로 하여도 적지 않은

5)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 시행)  
- 개정된 「보험업법」은 참고자료로 첨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우체국보험 가입자만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보험사별 실손보험 보유 현황>

(’22년 기준, 단위 : 만건, %)

| 순위  | 생명보험사 | 보유계약건수 | 점유율    | 순위  | 손해보험사 | 보유계약건수 | 점유율    |
|-----|-------|--------|--------|-----|-------|--------|--------|
| 1   | 삼성    | 245    | 31.9%  | 1   | 현대    | 616    | 20.9%  |
| 2   | 우체국보험 | 154    | 20.1%  | 2   | DB    | 499    | 16.9%  |
| 3   | 한화    | 126    | 16.4%  | 3   | 메리츠   | 441    | 14.9%  |
| 4   | 교보    | 112    | 14.6%  | 4   | 삼성    | 414    | 14.0%  |
| 5   | 농협    | 35     | 4.6%   | 5   | KB    | 413    | 14.0%  |
| 6   | 신한    | 24     | 3.1%   | 6   | 한화    | 216    | 7.3%   |
| 7   | 흥국    | 15     | 2.0%   | 7   | 흥국    | 182    | 6.2%   |
| 8   | 동양    | 15     | 2.0%   | 8   | 롯데    | 73     | 2.5%   |
| 9   | 미래에셋  | 14     | 1.8%   | 9   | 농협    | 45     | 1.5%   |
| 10  | ABL   | 9      | 1.2%   | 10  | MG    | 41     | 1.4%   |
| 11  | KDB   | 8      | 1.0%   | 11  | AIG   | 9      | 0.3%   |
| 12  | DB    | 4      | 0.5%   | 12  | 약사    | 1      | 0.0%   |
| 13  | 푸본    | 2      | 0.3%   | 13  | 에이스   | 1      | 0.0%   |
| 14  | DGB   | 2      | 0.3%   |     |       |        |        |
| 15  | AIA   | 2      | 0.3%   |     |       |        |        |
| 16  | KB    | 1      | 0.1%   |     |       |        |        |
| 17  | 라이나   | 0      | 0.0%   |     |       |        |        |
| 합 계 |       | 768    | 100.0% | 합 계 |       | 2,951  | 100.0% |

자료: 우정사업본부

- 이에 개정안은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보험업법」에 따른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                   | 조 문                      | 주요 내용                                                                           |
|----------------|-------------------|--------------------------|---------------------------------------------------------------------------------|
| 대상자            |                   | 안 제45조의2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
| 요청 기관          |                   | 안 제45조의2①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br>요양기관                                                       |
| 시스템 구축         |                   | 안 제45조의3①                | 체신관서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br>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 비용 부담 주체       |                   | 안 제45조의3③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br>비용은 국가가 부담                                                  |
| 업무 위탁<br>기관 관련 | 업무<br>위탁 기관       | 안 제45조의3②                | 전송대행기관 <sup>6)</sup>                                                            |
|                | 금지행위<br>및<br>제재조치 | 안 제45조의3④<br>및<br>안 제57조 | 정보 또는 자료 누설 금지<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 벌금)                                  |
|                |                   | 안 제45조의3⑤<br>및<br>안 제57조 | 서류 전송 업무 외의<br>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 금지<br>(3년 이하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 벌금)                  |
| 시행일            |                   | 부칙                       | 2024년 10월 25일,<br>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원급<br>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2025년<br>10월 25일부터 시행 |

6) [2024. 2.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  
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함.

○ 개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익 증대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므로 우체국 보험고객도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법령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sup>7)</sup>

|              |
|--------------|
| 문 의 처        |
| 02)6788-5232 |

---

7) 본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민간보험사의 사적(私的)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에 관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보험업법」 개정 당시와 동일한 의견)

-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은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한 제3자(보험회사)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존재함.(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의견)

## ※ [참고자료] 개정된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부 칙 <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